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3호서식] <개정 2017. 3. 31.>

#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발급일자 | 처리기간 30일 |
|---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| 상호(명칭) | |
| | 성명(대표자) | 생년월일 |
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|

| | |
|---|---|
| 검사소 | 전화번호 |
| | 주소 |

| | |
|---|---|
| 부지면적 ㎡ | 건물면적 ㎡ |

| |
|---|
| 검사장비 |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설비 및 기기열람표와 배치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) 1부<br>2. 사업계획서 1부<br>3. 검사업무규정(시설 및 기술인력관리·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) 1부 | 수수료<br>20,000원 |

210㎜×297㎜[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/㎡]